

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9 - 2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9년 ~ 2022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9년 의원 월정수당을 2,502,080원에서 2,567,130원으로 변경

나. 2020년~2022년 의원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함

다. 의원 여비 기준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조 '별표5'의 지급규정 준용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등촌2동 512-1) 강서구의회
(전화 : 2600-1807, 팩스 : 2600-1840)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2,502,080원의 월정수당을 강서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를 “2,567,130원의 월정수당을 강서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직전연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로 한다.

제7조 삭제

별표1 삭제

별표2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u>2,504,430원</u>의 월정수당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조신설 2017.3.15., 개정 2017.11.29.)</p>	<p>제3조(월정수당) ----- ----- <u>2,567,130원</u>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직전연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 -----.</p>
<p>제6조(여비지급 기준) ①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p>	<p>제6조(여비지급 기준)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p>
<p>제7조(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출장시의 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내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1의 일비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18.4.25.)</p>	<p>제7조 삭제</p>